



### 결의안 제3호

#### 특이 상황 시 위원들의 원격 참여를 허용하는 현장개정위원회 결의안.

공직자법 제103-a절에 따라, 현장개정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25년 1월 7일에 공개 회의를 개최하여, 공직자법 제7조(공개회의법이라고도 함)의 요건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화상회의의 특정 사용을 허용하는 결의안 채택을 고려했습니다.

위원회 회의에 원격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은 위원들에게 유연성을 제공하고, 회의 과정에 더 많이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시민에게 이익이 됩니다.

따라서, 공개회의법의 요건과 본 결의안에 따라 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제한된 화상회의 사용을 허가하기로 결의합니다.

위원회 정족수를 최소한 충족하는 위원들은 시민들의 직접 참석이 가능한 하나의 장소 또는 여러 장소에 출석해야 합니다.

위원회 회의에 위원 정족수가 물리적으로 출석하는 경우, 위원회의 정족수 요건을 충족할 필요가 없는 위원은 어느 위치에서든 화상회의를 통해 회의에 출석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그 중 장애 또는 질병, 간병 책임, 기타 중대하거나 예기치 않은 사건으로 인해 해당 회의에 물리적으로 참석할 수 없는 위원은 그러한 위치에 대한 접근 권한을 시민들에게 제공하지 않고도 화상회의를 통해 회의에 출석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화상회의로 회의에 참여하는 위원은 위원회가 비공개 회의를 진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시민들이 해당 위원을 보고, 듣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화상회의로 위원회 회의에 참여하고자 하는 위원은 회의 참여 전에 집행이사에게 참여 의사를 알리고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본 결의안에 따라 위원이 장애 또는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공개되지 않는 장소에서 화상회의를 통해 위원회의 회의에 참여하는 경우, 위원회는 시민들에게 해당 회의를 화상으로 시청할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의견 제시 또는 참여가 허용되는 경우에는 실시간으로 화상회의를 통해 회의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본 결의안에 기술된 권한은 위원회 산하 모든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회의에도 적용됩니다. 본 결의안은 2025년 1월 8일부터 시행합니다.

날짜: 2025년 1월 7일